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에 의무경찰 대체 인력 8명(경감 1명, 경위 1명, 순경 6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경남서부해역의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으로 사천해양경찰서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총경 1명, 경정 2명, 경감 3명, 5급 1명)을 증원하며, 해양치안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52명(경감 2명, 경위 34명, 경사 28명, 경장 40명, 순경 79명, 6급 2명, 7급 10명, 8급 49명, 9급 8명)을 증원하며, 해양경찰정비창에 의무경찰 대체 인력 및 제2정비창 신설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경위 1명, 7급 3명)을 증원하고, 현장 지휘역량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정원 84명(경무관 1명, 경감 3명, 경위 21명, 경사 58명, 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치안감 1명, 경정 3명, 경감 21명, 경위 58명, 5급 1명)하는 내용으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 00. 0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사천해양경찰서 신설에 따른 지방해양경찰청관서의 관할구역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사천해양경찰서에 장비관리운영팀을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2. 7. ~ 2.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중 “태안해양경찰서·완도해양경찰서·울산해양경찰서·포항해양경찰서·속초해양경찰서·보령해양경찰서·부안해양경찰서 및 울진해양경찰서”를 “태안해양경찰서·완도해양경찰서·울산해양경찰서·포항해양경찰서·속초해양경찰서·보령해양경찰서·부안해양경찰서·울진해양경찰서 및 사천해양경찰서”로 한다.

별표 2의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의 여수 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란 바목 중 “34도42분36초”를 “34도43분”으로 하고, 같은 란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북위 34도56분48초 동경 127도52분20초

나. 북위 34도56분31초 동경 127도52분18초

별표 2에 남해 지방해양경찰청의 사천 해양경찰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천 해양경찰서	○ 경상남도 사천시·진주시·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 및 거창군·고성군(영오면·영현면·상리면·하일면·하이면) ○ 다음 각 호의 선의 내측 해역 1. 다음 각 목의 선을 연결한 선
-------------	--

	가. 북위 34도56분48초 동경 127도52분20초
	나. 북위 34도56분31초 동경 127도52분18초
	2. 다음 각 목의 선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가. 북위 34도43분 동경 128도
	나. 북위 34도40분 동경 128도
	다. 북위 34도40분 동경 128도17분
	라. 북위 34도54분15초 동경 128도17분
	마. 북위 34도54분17초 동경 128도16분57초

별표 2의 남해 지방해양경찰청의 통영 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란 기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경상남도 통영시·거제시·고성군(영오면·영현면·상리면·하일면·하이면은 제외한다)

별표 2의 남해 지방해양경찰청의 통영 해양경찰서관할구역란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1호로 하고, 같은 란 제4호(중전의 제1호) 중 “연결한”을 “순차적으로 연결한”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란 가목부터 가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나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란에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 마목(중전의 나목) 중 “128도00분”을 “128도”로 하고, 같은 란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가. 북위 34도47분12초 동경 128도44분20초

나. 북위 34도47분12초 동경 128도45분

가. 북위 34도54분17초 동경 128도16분57초

나. 북위 34도54분15초 동경 128도17분

다. 북위 34도40분 동경 128도17분

라. 북위 34도40분 동경 128도

별표 4 중 총 계 “505”를 “513”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410”을 “418”로 하며, 경감 “53”을 “54”로 하고, 경위 “87”을 “88”로 하며, 순경 “19”를 “25”로 한다.

별표 4의2 중 총 계 “539”를 “547”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409”를 “417”로 하며, 경감 “53”을 “54”로 하고, 경위 “85”를 “86”으로 하며, 순경 “18”을 “24”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205”를 “214”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70”을 “178”로 하며, 경위 “43”을 “44”로 하고, 순경 “21”을 “28”로 하며, 일반직 계 “35”를 “36”으로 하고,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해양수산서기보 · 보건서기보 · 환경서기보 · 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5 다음에 “행정서기 · 조리서기 또는 경장 1”를 신설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205”를 “214”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69”를 “177”로 하며, 경위 “42”를 “43”으로 하고, 순경 “21”을 “28”로 하며, 일반직 계 “36”을 “37”로 하고,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해양수산서기보 · 보건서기보 · 환경서기보 · 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 다음에 “행정서기 · 조리서기 또는 경장 1”를 신설한다.

별표 6 중 총계 “196”을 “199”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83”을 “185”로 하며, 경정 “5”를 “6”으로 하고, 경감 “15”를 “14”로 하며, 경위 “20”을 “21”로 하고, 경장 “51”을 “52”로 하며, 일반직 계 “13”을 “14”로 하고, 행정서

기보 · 공업서기보 · 해양수산서기보 · 보건서기보 · 환경서기보 · 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 다음에 “행정서기보 · 조리서기보 또는 순경 1”를 신설한다.

별표 7 중 총 계 “11,625”를 “11,872”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0,649”를 “10,828”로 하며, 치안감 “2”를 “3”으로 하고, 경무관 “5”를 “4”로 하며, 총경 “44”를 “45”로 하고, 경정 “165”를 “169”로 하며, 경감 “606”을 “630”으로 하고, 경위 “940”을 “1,009”로 하며, 경사 “2,015”를 “1,985”로 하고, 경장 “3,006”을 “3,045”로 하며, 순경 “3,865”를 “3,937”로 하고, 일반직 계 “976”을 “1,004”로 한다.

별표 7 중 공업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20”을 “21”로 하고,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해양수산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01”을 “103”으로 하며,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보건주사보 · 환경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79”를 “85”로 하고,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09”를 “213”으로 하며,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해양수산서기 · 보건서기 · 환경서기 · 시설서기 · 방재안전서기 · 전산서기 · 방송통신서기 또는 경장 “29”를 “37”로 하고,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해양수산서기 · 환경서기 · 시설서기 · 방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82 다음에 “행정서기 · 조리서기 또는 경장 40”를 신설하며,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해양수산서기보 · 보건서기보 · 환경서기보 · 시설서기보 · 방재안전서기보 · 전산서기보 · 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순경 “11”을 “13”으로 하고, 행정서기보 · 조리서기보 또는 순경 “40”을 “45”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11,616”을 “11,863”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0,622”를 “10,801”로 하며, 치안감 “2”를 “3”으로 하고, 경무관 “5”를 “4”로 하며, 총경 “44”를 “45”로 하고, 경정 “176”을 “180”으로 하며, 경감 “603”을 “627”로 하고, 경위 “925”를 “994”로 하며, 경사 “2,013”을 “1,983”으로 하고, 경장 “3,004”를 “3,043”으로 하며, 순경 “3,849”를 “3,921”로 하고, 일반직 계 “994”를 “1,062”로 한다.

별표 7의2 중 공업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20”을 “21”로 하고,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해양수산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98”을 “100”으로 하며,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보건주사보 · 환경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79”를 “85”로 하고,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11”을 “215”로 하며,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해양수산서기 · 보건서기 · 환경서기 · 시설서기 · 방재안전서기 · 전산서기 · 방송통신서기 또는 경장 “29”를 “37”로 하고,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해양수산서기 · 환경서기 · 시설서기 · 방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83 다음에 “행정서기 · 조리서기 또는 경장 40”를 신설하며,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해양수산서기보·보건서기보·환경서기보·시설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전산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순경 “24”를 “26”으로 하고, 행정서기보·조리서기보 또는 순경 “40”을 “45”로 한다.

별표 8 중 총 계 “223”을 “227”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38”을 “39”로 하며, 일반직 계 “185”를 “188”로 하고, 5급 이하 “184”를 “187”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250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2년 7월 25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사천해양경찰서 장비관리운영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사천해양경찰서 장비관리운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사천해양경찰서 장비관리운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사천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장이 분장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해양경찰서) ① 해양경찰서에 기획운영과·경비구조과·해양안전과·수사과·정보외사과·해양오염방제과 및 장비관리과를 둔다. 다만, 인천해양경찰서 및 동해해양경찰서에는 기획운영과·경비구조과·해양안전과·수사과·정보외사과·해양오염방제과·장비관리과 및 보안팀을 두고, <u>태안해양경찰서·완도해양경찰서·울산해양경찰서·포항해양경찰서·속초해양경찰서·보령해양경찰서·부안해양경찰서 및 울진해양경찰서</u> 에는 기획운영과·경비구조과·해양안전과·수사과·정보외사과·해양오염방제과 및 장비운영관리팀을 둔다.	제30조(해양경찰서) ① ----- ----- ----- -----. ----- ----- ----- ----- ----- <u>태안해양경찰서·완도해양경찰서·울산해양경찰서·포항해양경찰서·속초해양경찰서·보령해양경찰서·부안해양경찰서·울진해양경찰서 및 사천해양경찰서</u>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해양수산부령 제250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50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운영되는 태안·완도·울산·포항·속초해양경찰서 장비관리운영팀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운영되는 <u>태안·완도·울산·포항·속초해양경찰서 장비관리운영팀</u>은 <u>2022년 7월 25일까지 존속한다.</u>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4]

해양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505</u>		<u>513</u>	+8	
경찰공무원	계		<u>410</u>		<u>418</u>	+8	
		•		•	•		
		•		•	•		
경	감		<u>53</u>		<u>54</u>	+1	
경	위		<u>87</u>		<u>88</u>	+1	
		•		•	•		
		•		•	•		
순	경		<u>19</u>		<u>25</u>	+6	
		•		•	•		
		•		•	•		

[별표 4의2]

해양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539</u>	• <u>547</u>	+8
경찰공무원 계	<u>409</u>	<u>417</u>	+8
•	•	•	
•	•	•	
경감	<u>53</u>	<u>54</u>	+1
경위	<u>85</u>	<u>86</u>	+1
•	•	•	
•	•	•	
순경	<u>18</u>	<u>24</u>	+6
•	•	•	
•	•	•	

[별표 5]

해양경찰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205</u>	• <u>214</u>	+9
경찰공무원 계	<u>170</u>	<u>178</u>	+8
•	•	•	
•	•	•	
경 위	<u>43</u>	<u>44</u>	+1
•	•	•	
•	•	•	
순경	<u>21</u>	<u>28</u>	+7
일반직 계	<u>35</u>	<u>36</u>	+1
•	•	•	
•	•	•	
<u>행정서기·조리서기 또는</u>	<u><신 설></u>	<u>1</u>	+1
<u>경장</u>			
•	•	•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의2]

해양경찰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205</u>	• <u>214</u>	+9
경찰공무원 계	<u>169</u>	<u>177</u>	+8
•	•	•	
•	•	•	
경 위	<u>42</u>	<u>43</u>	+1
•	•	•	
•	•	•	
순 경	<u>21</u>	<u>28</u>	+7
일반직 계	<u>36</u>	<u>37</u>	+1
•	•	•	
•	•	•	
<u>행정서기·조리서기 또는</u>			
<u>경 장</u>	<u><신 설></u>	<u>1</u>	+1
•	•	•	

[별표 6]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3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196</u>	• <u>199</u>	+3
경찰공무원 계	• <u>183</u>	• <u>185</u>	+2
경 정	• <u>5</u>	• <u>6</u>	+1
경 감	• <u>15</u>	• <u>14</u>	-1
경 위	• <u>20</u>	• <u>21</u>	+1
경 장	• <u>51</u>	• <u>52</u>	+1
일반직 계	• <u>13</u>	• <u>14</u>	+1
행정서기보 · 조리서기보	• <u><신 설></u>	• <u>1</u>	+1
또는 순경			

[별표 7]

지방해양경찰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1,625	11,872	+247
경찰공무원 계	10,649	10,828	+179
치안감	2	3	+1
경무관	5	4	-1
총경	44	45	+1
경정	165	169	+4
경감	606	630	+24
경위	940	1,009	+69
경사	2,015	1,985	-30
경장	3,006	3,045	+39
순경	3,865	3,937	+72
일반직 계	976	1,004	+28

공업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	<u>20</u> .	<u>21</u> .	+1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해양수산 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방 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 신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 .	<u>101</u> . .	<u>103</u> . .	+2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해양 수산주사보 · 보건주사보 · 환경 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u>79</u>	<u>85</u>	+6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해양 수산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 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전산 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u>209</u>	<u>213</u>	+4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해양수산 서기 · 보건서기 · 환경서기 · 시 설서기 · 방재안전서기 · 전산서 기 · 방송통신서기 또는 경장 · ·	<u>29</u> · ·	<u>37</u> · ·	+8
<u>행정서기 · 조리서기 또는 경장</u> ·	<u><신 설></u> ·	<u>40</u> ·	+40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해양 수산서기보 · 보건서기보 · 환경 서기보 · 시설서기보 · 방재안전 서기보 · 전산서기보 · 방송통신 서기보 또는 순경 ·	<u>11</u> ·	<u>13</u> ·	+2
행정서기보 · 조리서기보 또는 순경 · ·	<u>40</u> · ·	<u>45</u> · ·	+5

[별표 7의2]

지방해양경찰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1,616	11,863	+247
경찰공무원 계	10,622	10,801	+179
치안감	2	3	+1
경무관	5	4	-1
총경	44	45	+1
경정	176	180	+4
경감	603	627	+24
경위	925	994	+69
경사	2,013	1,983	-30
경장	3,004	3,043	+39
순경	3,849	3,921	+72
일반직 계	994	1,062	+68

공업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	<u>20</u> .	<u>21</u> .	+1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해양수산 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방 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 신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 .	<u>98</u> . .	<u>100</u> . .	+2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해양 수산주사보 · 보건주사보 · 환경 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u>79</u>	<u>85</u>	+6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해양 수산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 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전산 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u>211</u>	<u>215</u>	+4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해양수산 서기 · 보건서기 · 환경서기 · 시 설서기 · 방재안전서기 · 전산서 기 · 방송통신서기 또는 경장 · ·	<u>29</u> · ·	<u>37</u> · ·	+8
<u>행정서기 · 조리서기 또는 경장</u> ·	<u><신 설></u> ·	<u>40</u> ·	+40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해양 수산서기보 · 보건서기보 · 환경 서기보 · 시설서기보 · 방재안전 서기보 · 전산서기보 · 방송통신 서기보 또는 순경 ·	<u>24</u> ·	<u>26</u> ·	+2
행정서기보 · 조리서기보 또는 순경 · ·	<u>40</u> · ·	<u>45</u> · ·	+5

[별표 8]

해양경찰정비창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6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223</u>	• <u>227</u>	+4
경찰공무원 계	<u>38</u>	<u>39</u>	+1
일반직 계	<u>185</u>	<u>188</u>	+3
•	•	•	
5급 이하	<u>184</u>	<u>187</u>	+3